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583호
- 나. 제 안 자 : 신복자의원 외 30명
- 다. 제안일자 : 2023년 3월 27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2. 제안이유

-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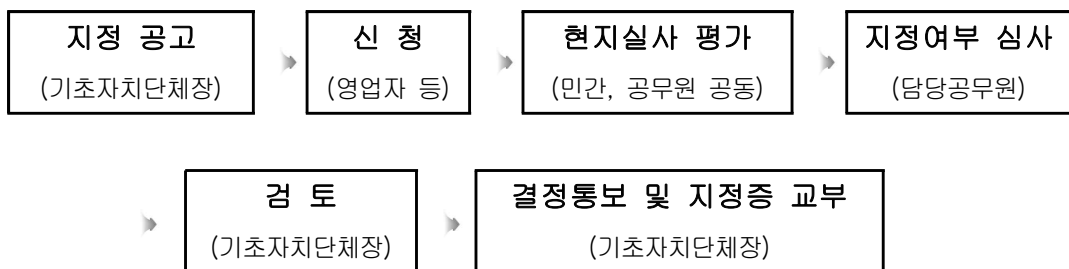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확산에 필요한 자원과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됨.

나. 조례 제정의 배경

-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이 가격과 위생, 청결과 친절도, 공공성 등의 기준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음.

< 지정 절차 방법 >



- 현재 13개 광역자치단체와 159개 시·군·구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

- 시행(2011년) 초기에는 전국 6,576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외식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문을 닫으면서 현재는 6,135개소가 운영 중임.

<17개 광역자치단체 착한가격업소 및 조례 제정 현황('23.2기준)>

연번	자치단체명	착한가격업소	조례	연번	자치단체명	착한가격업소	조례
1	서울특별시	831개소	×	10	강원도	428개소	○
2	부산광역시	601개소	○	11	충청북도	287개소	○
3	대구광역시	268개소	○	12	충청남도	324개소	×
4	인천광역시	224개소	○	13	전라북도	308개소	○
5	광주광역시	196개소	○	14	전라남도	362개소	○
6	대전광역시	340개소	○	15	경상북도	507개소	×
7	울산광역시	105개소	○	16	경상남도	388개소	○
8	세종특별시	38개소	○	17	제주특별자치도	236개소	○
9	경기도	692개소	×	합 계		6,135개소	13개

- 서울시는 25개 전체 자치구에서 831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운영 중 (12개 자치구¹⁾ 조례 제정)이며, 2012년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해왔음.
- 그러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관리 업무가 자치구 소관 사무로 판단해 별도의 지원 조례는 제정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운영 예산 대부분을 시비보조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임.

1) 12개 자치구 조례 제정(종로, 성동, 광진,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 25개 자치구 품목별 착한가격업소 현황('23.2.기준) >

구분	계	외 식 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계	한식	일식	중식	경양식	기타(외식)	소계	세탁업	이·미용업	숙박업	기타(목욕업 등)
계	831	521	419	8	39	8	47	310	49	240	1	20
종로구	19	9	6			1	2	10		8	1	1
중 구	14	11	10		1			3	1	2		
용산구	20	19	14	2	1	1	1	1		1		
성동구	16	7	6		1			9	3	6		
광진구	48	22	14		2	1	5	26	5	20		1
동대문	17	13	12		1			4		4		
종랑구	34	16	11		4		1	18	1	14		3
성북구	17	14	13			1		3	1	2		
강북구	20	8	7				1	12	3	8		1
도봉구	45	28	19		4		5	17		16		1
노원구	18	9	7		2			9	2	7		
은평구	25	18	16	1			1	7	1	6		
서대문	44	26	22		2		2	18		17		1
마포구	50	25	19	1	1		4	25	2	22		1
양천구	24	10	7		3			14	2	11		1
강서구	23	9	8		1			14	1	12		1
구로구	53	28	24		2		2	25	4	17		4
금천구	39	21	18		2		1	18	7	8		3
영등포	23	15	12	1	2			8	1	7		
동작구	87	61	52	1	2	1	5	26	9	17		
관악구	48	33	25	1	1		6	15	2	12		1
서초구	13	13	10			1	2					
강남구	75	72	58	1	3	1	9	3		3		
송파구	44	25	20		4	1		19	4	15		
강동구	15	9	9					6		5		1

-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추진계획(‘2023.02.)” 에 따라 국비보조금 일부를 지원(국비 30 : 시비 70)받게 되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짐.

<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교부금 지원 현황 >

년도별	2023년 상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교부금액	국비	88	292백만원	248백만원	254백만원	312백만원	299백만원	303백만원
	시비	204						
년도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	
교부금액	300백만원	309백만원	244백만원	245백만원	203백만원	158백만원	-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²⁾할 수 있고,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사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음.
-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자치구에서 공고와 심사,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서울시의 소관사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입법적 판단이 필요함.

다. 조문별 검토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착한가격업소” 를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에 대한 가격·품질·위생 등의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와 평가 등을 통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로 정의함.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례에 그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이 필요함.

2) 「지방자치법」 제28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3조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 종량제·쓰레기봉투 지원, ▶ 소규모 시설개선과 안전점검 보조, ▶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들어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 고물가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거나 착한가격업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 따라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자율적으로 착한가격업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다만,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혜택은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에 비해 소액에 불과하여, 자격유지의 동기부여로 작용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료구입비와 전기요금 지원 등의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야 함.

(3)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장이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낮고 이용 증대효과가 미미하므로,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하고 서울시가 보유한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유도해야 함.

(4)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이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낮은 수준의 가격 외에도 위생상태나 업소의 청결도, 가격과 원산지 표시 준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함.
- 또한, 착한가격업소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개별 업소의 매출 변화, 소비자의 반응 등을 꾸준히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다만, 지정업소에 대한 점검과 관리운영은 구청장의 소관 업무이므로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착한가격업소 운영의 내실화와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5)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6조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도록 규정함.
- 이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역사회공헌과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포상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 확산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라. 종합의견

- 제정안은 2011년 행정안전부 주도로 시행된 착한가격업소 운영이 시·군·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시·도별 지원으로 확장되면서 지역 물가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음.
- 조례 제정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홍보활동,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는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소에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인정받아 가치소비와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혜택이 부여되어야 함.

- 또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은 후 지역 평균물가보다 가격을 인상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자가 변경된 업소 등은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를 통해 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착한가격업소는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재정적 지원 외에는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는 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입법적 한계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광철	02-2180-8064